

보험의 이해 (I)

공동집필 · 박해준 고문 A&Z 경영컨설팅(주)
정보영 이사 물류신문사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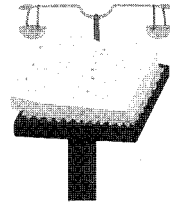
1. 보험
2. 약관
3. 보험계약
4.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5. 보험증권
6. 고지 의무
7. 손해보험
8. 초과보험
9. 중복보험
10. 일부보험
11. 화재보험
12. 운송보험
13. 해상보험
14. 적하보험
15. 책임보험
16. 자동차보험
17. 인보험
18. 생명보험
19. 상해보험
20. 상호보험
21. 자가보험
22. 희망이의보험

보험(insurance)이란 손해를 물어주겠다는 보증, 곧 확실하다는 보증이다. 경제학에서는 우연히 생기는 사고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신체에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인데,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피보험자가 재난을 입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로 하고 보험료를 받는 일이다.

1. 보험(保險)

동일한 경제적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각출(釀出)하여 공통준비재산(共通準備財産)을 형성하고, 그 재산에 의하여 현실로 사고를 당한 자가 재산적 급여, 즉 보험료를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인데, 상행위가 되는 것은 독립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영업으로 인수하는 영리보험의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보험가입자 그 자신이 구성하는 단체가 보험자가 되는 상호보험이나 정부가 관장하는 의료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같은 공영보험은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제4편을 독립하여 제1장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되는 통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장에서 손해보험, 제3장에서 인보험(人保險)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인보험을 생명보험(生命保險)과 상해보험(傷害保險)으로 나누고 있다. 생명보험에는 사람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生存保險),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死亡保險), 위의 양자가 혼합된 양로보험 등이 있다. 그리고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이에 대하여 손해보험은 보험 사고가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류를 전부 나열할 수 없으나 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자동차보험) 등이 그것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는 부정액보험에 대하여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리 정하여진 일정액이 지급된다. 이것이 이른바 정액보험이다.

또 전자에서는 주로 물건이 대상으로 되고(물건보험), 후자는 사람이 대상으로 된다는(인보험) 점이 서로 다르다. 다만 인보험중에서 생명보험은 어느 경우나 정액보험(定額保險)이지만 상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양태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신체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2. 약관(約款)

원래 약관이란 계약이나 조약 등에서 정해진 하나하나의 조항을 말한다. 정형적인 계약조건을 당사자 일방이 미리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을 말한다. 약관에는 이미 작성된 계약조항의 전체를 지칭하는 보통거래약관(普通去來約款) 또는 보통약관(普通約款)의 경우가 있는데, 단지 약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의미가 많다. 특약조항이나 면책조항을 정한 특약약관(特約約款)·면책약관(免責約款)의 경우 등이 있다.

약관은 미리 사업자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정하여져 있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타방의 당사자가 약관대로의 계약내용에 동의하든가, 그것이 불만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동의·부동의의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하는 특색이 있다. 보험계약은 모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고 그밖에 운송약관, 토목건축약관, 은행약관(약정서 등) 등이 있다. 매매와 같이 계약내용의 결정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의사와 합치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그래서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계약을 부종계약(附從契約) 또는 부합계약(附合契約)이라고도 한다.

약관은 기업의 독점화와 집단적 거래의 발전에 따라 발생되고 제도화된 것이다. 따라서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측이 유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게 되므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와 같은 약관에 의한 계약이 본래의 의미의 계약인가가 문제이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약관 그 자체가 법적인 규범성을 가지는가도 문제가 되어 있다.